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6. 2 선고 2016가단5025457 판결 [입회보증금반환청구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일송개발 주식회사

변론 종결 2016. 5. 17.

판결 선고 2016. 6. 2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78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2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09. 7. 8. 피고가 운영하는 레이크힐스 용인컨트리클럽의 정회원(회원번호: B)이 되면서 입회보증금으로 178,000,000원을 예탁하였고 당시 피고가 발행한 회원자격보증예탁금증서에 위 금액은 회원자격 개시일로부터 5년 거치 후 반환요구가 있을 때 위 증서의 회수와 동시에 무이자로 반환된다고 기재되어 있다(이에 따른 입회계약을 이하에서는 '이 사건 입회계약'이라 한다).

나.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클럽에서의 탈회와 더불어 위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(가치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입회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6.2. 15. 무렵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,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회보증금 178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

1) 피고는 위 클럽 회칙에 '입회금 예치 후 5년이 경과된 회원은 탈회 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회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연장됨을 원칙으로 한다'(제7조 제2항), '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는 제7조의 거치기간 내에 탈회를 요구할 수 없으며 5년이 경과된 후 탈회신청이 없으면 자동갱신한 것으로 본다'(제15조)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원고가 위 회원자격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무렵에 탈회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동갱신되어 위 거치기간은 2019. 7. 8.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.

그런데 피고가 위 클럽 회칙이라고 주장하는 을 제1호증이 이 사건 입회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2) 피고는 설령 위 입회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위 금액에서, 원고가 당초의 거치기간인 5년이 만료된 이후인 2015. 5. 24.부터 2015. 11. 21.까지 5회에 걸쳐 위 클럽을 이용함으로써

부당이득한 '비회원가격 합계 1,405,000원과 회원가격 합계 115,000원의 차액인 1,290,000원'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위 주장은 당초의 거치기간인 5년이 만료된 이후에 해당하는 위 이용기간에는 이 사건 입회계약이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,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입회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6. 2. 15. 무렵에 비로소 종료되었으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다.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8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6. 2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 **3. 결론**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윤종섭